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일: 2025년 4월 3일, 임오경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5년 4월 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8회국회(임사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 8. 21.) 상정, 제안설명, 검토
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026. 9. 3.)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 9. 16.)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
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임오경의원)

이 개정 법률안은 2025년 8월 21일 본 의원 외 15인이 공동발의 한 것으로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은 기록성과 예술성을 함께 지닌 매체로서 작가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대중문화와 영상산업, 교육 및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사진 분야는 문화예술 및 산업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도적 지원체계가 미비한 실정이며, 특히 사진작가의 권익 보호, 저작권 관리, 전문인력 양성, 공공기록물로서의 사진 보존 등은 체계적인 법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사진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산업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사진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신장하며, 나아가 국가 문화산업 전반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¹⁾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장관은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열거하고 있음.

종합계획에는 ①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및 법령·제도의 개선(제1호), ② 창작활동 활성화(제2호), ③ 수출촉진과 고용창출(제3호), ④ 기술의 개발 및 보급(제4호), ⑤ 유통의 전문화 및 유통구조의 개선(제5호), ⑥ 창업지원 등 산업육성(제6호), ⑦ 전문인력의 양성(제7호), ⑧ 인프라 구축(제8호), ⑨ 국제협력(제9호), ⑩ 위법하게 제작되거나 판매·배포 또는 이용에 제공되는 음반등의 지도·단속(제10호), ⑪ 위법하게 제작·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되는 음반등에 대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자율감시활동의 지원(제11호) 및 그 밖에 관련 업소의 건전한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사항(제12호)이 포함되어야 함.

개정안은 제3조제2항제8호의 ‘인프라’라는 용어를 ‘기반시설’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외국어인 ‘인프라’를 국립국어원이 권장하는 우리말 용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법령·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창작활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수출촉진과 고용창출에 관한 사항
4.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유통의 전문화 및 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창업지원 등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7.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9.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위법하게 제작되거나 판매·배포(이하 “유통”이라 한다) 또는 이용에 제공되는 음반등의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11. 위법하게 제작·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되는 음반등에 대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의 자율감시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관련 업소의 건전한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어인 ‘기반시설’로 순화함으로써 국민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공공언어의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어 대신 우리말을 사용하여 국민의 법령 이해도를 제고하고 공공언어 순화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용어가 변경되어도 법령 체계 및 해석상 무리가 없다는 점에서 개정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참고로, 유사한 취지로 외국어인 ‘인프라’를 ‘기반시설’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이정문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장)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8. 기타 사항

없 음.